

서면브리핑

2014년 8월 1일(금) 배포 시점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의결 안건]

가. 이용자보호과장 양기철 과장(1540)

2014년 제 32차 위원회 결과

☐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

[의결안건]

가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안에
관한 건(첨부자료 참조)

-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▲과징금 부과 제도 개선(본인확인기관 지정기준 부적합 시 업무정지 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 등)과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▲임시조치제도 개선(임시조치 기간 중 게재자의 이의제기권 신설) ▲명예훼손분쟁조정 기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

<첨부>

□ 주요내용

① 과징금 부과 제도 개선 관련

① 업무정지 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(안 제23조의5 신설)

- 현재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,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
 -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, 본인확인 업무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

② “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”의 구체적 위임 근거 마련(안 제64조의3제1항)

- 현재 “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”의 위임 근거가 없음에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
 - ※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9조의2 : “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”이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매출액

③ 과징금 체납시 가산금 부과기간 상한 신설(안 제64조의3제8항 신설)

- 과징금 징수채권 소멸시효(5년)에 맞추어 과징금 체납시 가산금 부과기간을 60개월을 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
 - ※ 국세징수법 제21조제3항 :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

④ 과징금 체납시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 제공 요청 근거 신설(안 제64조의3제9항 신설)

- 체납 과징금의 징수를 위해 국세청장에게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과세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

② 임시조치제도 개선 및 명예훼손분쟁조정 기능 강화 관련

① 임시조치 이의제기권 신설(안 제44조의2제5항 및 제6항)

- 임시조치기간 중에 게재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이의제기 이후 후속절차를 규정
 - (이의제기가 있는 경우) 포털 등은 해당사안을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로 송부
 - (이의제기가 없는 경우) 임시조치기간 만료 후 해당정보를 삭제

② 명예훼손분쟁조정기능 강화(안 제44조의10, 11, 12, 13, 14)

- 방심위 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
 - (구성)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(상임1인 포함)으로 구성하고, 방통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촉(사안별로 3인~5인으로 조정부 구성)
 - (조정기간)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조정기간을 단축(현행60일 ⇒ 30일)
 - ※ 임시조치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로 송부된 사안은 직권조정으로 10일 이내에 결정
 - (효력) 조정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‘재판상 화해’ 효력을 부여

구 분	현 행	개정안
위원 구성	5명 이내 / 방심위원장 위촉	30명 이내 / 방통위원장 위촉
조정 기간	60일	30일(임시조치사안은 10일)
조정 효력	민사상 화해(사적 계약)	재판상 화해(법원 확정판결과 동일)

③ 업계 자율심의 강화(안 제44조의3제2항)

- 자율심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털 등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임의의 임시 조치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감면
 - ※ 현재 이용자 요청에 의한 임시조치에 대해서만 포털의 배상책임을 감면함(제44조의2 제6항)

④ 인터넷이용자 피해구제센터 설치 근거규정 신설(제44조의15)

- 인터넷상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에 대한 상담·접수 등이 가능한 ‘인터넷이용자 피해구제센터’ 근거규정을 신설